

금강어학원한국어및한국문화강좌운영지침

제 정 : 2016. 12. 1
 개 정 : 2018. 5. 21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금강어학원 규정 제4조의 사업 중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좌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학제) 한국어 및 한국문화강좌의 학제는 연 2학기로 하며, 단기과정(계절학기)을 개설할 수 있다.

1. 1학기 : 매년 3월 1일부터
2. 2학기 : 매년 9월 1일부터
3. 단기과정 : 여름·겨울방학 기간 중

제3조(과정 및 기간) ①한국어 강좌는 그 과정을 초급, 중급, 고급으로 한다.

②각 과정별 교육기간은 각 15주로 하며, 단기과정은 8주 이내로 한다.

제4조(외국인전형위원회) ①한국어강좌에 지원한 자의 입학허가를 위하여 외국인전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원장, 교학지원처장, 기획관리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원장은 위원장이 된다.

③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지원자격)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강좌에는 외국인, 재외국민,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이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절차)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좌 지원자는 수학에 필요한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1. 지원기간 : 매년 5-6월과 11-12월
2. 지원서류
 - 가. 입학지원서
 - 나. 기숙사 입소 신청서
 - 다. 자기소개서
 - 라. 여권 사본
 - 마. 최종 학교 재학(졸업) 증명서
3. 이외의 서류는 필요에 따라 정하여 따로 고지한다.

제7조(입학허가 및 시기) ①지원자의 서류와 동영상으로 심사 후 입학허가를 허가하며, 필요시 전화 면접을 보충할 수 있다.

② 입학 시기는 매년 3월 1일, 9월 1일로 한다

제8조(출석과 과정이수)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좌의 연수자는 각 과정별로 총 수업 시간의 3/4출석과 각 과정별 평가에 합격해야 해당 과정에 대한 이수를 인정한다.

제9조(이수 제한) 초급과정을 이수한자에 한하여 중급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, 중급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고급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입학허가시 초급과정에 대하여 특별시험을 통하여 초급과정의 이수를 면제 받은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험평가) 각 과정별 시험평가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한다.

제11조(평가 성적의 활용) 각 과정별 평가 성적은 다음 학기 과정 배정에 반영한다.

제12조(특별 강좌 개설) ①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
②특별 강좌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13조(수료증)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좌 각 과정 이수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수료증(별지1)을 수여한다.

부 칙

1.(시행시기) 이 지침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폐지된 금강어학원한국어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개정 지침은 2018학년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